

의안번호	제 144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4월 일 (제 299 회)

**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1년 4월 4일

#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1. 4. 4.  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 1. 제안이유

지역교육청의 단위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, 현장 밀착형 장학지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고등학교에 대한 컨설팅장학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가. 일반고등학교에 대한 컨설팅장학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함(안 제5조제2호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중등교육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(2) 입법예고(2011. 2.25. ~ 2011. 3.1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: 평가결과 해당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
**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관할학교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·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와  
관할구역 내 일반고등학교의 컨설팅장학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관할학교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·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</u></p> <p>3. ~ 29. (생략)</p>	<p>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관할학교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·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와 관할구역 내 일반 고등학교의 컨설팅장학</u></p> <p>3. ~ 29. (현행과 같음)</p>

# 관 계 법 령

## 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[법률 제10046호, 2010. 2. 26.]

제26조(사무의 위임·위탁 등)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35조(교육장의 분장 사무) 교육장은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.

1. 공·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
2.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

## 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[대통령령 제22230호, 2010. 6.29.]

제6조(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)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수학습활동, 진로지도, 강사 확보·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2. 과학·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
3. 특수교육,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,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
4. 학교체육·보건·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
5.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
6. 학부모의 학교 참여, 연수·상담,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7. 평생교육 등 교육·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·집행, 수업료, 입학금 등 각급 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 사항